

[서식 예] 대여금청구의 소(일부변제 받은 뒤 잔여금 청구)

소 장

원 고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)
○○시 ○○구 ○○로 ○○(우편번호)
전화·휴대폰번호: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던 동료의 관계에 있었고, 피고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평소 성실한 태도와 활달한 성격 탓에 동료들간에 신망이 두터웠



고 업무처리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여러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왔던 직원이었습니다.

- 2. 원고는 피고와 20○○. ○월부터 같은 과에서 근무를 하였는데, 마침 원고가 주식투자에서 이익금을 얻었던 것을 알게 된 피고가 급히 금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수개월 내에 변제를 하겠다고 약속하고 20○○. ○. ○.에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한 뒤 원고로부터 금 ○○○원을 빌려갔습니다.
- 3. 위 금액을 빌려간 피고는 약속한 대여금의 변제를 지체하고 20〇〇. 〇. ᄉ. ᄉ. 직하였습니다. 원고가 피고의 사직 후 계속하여 변제독촉을 하자 피고는 20〇〇. 〇. 〇.에 금 〇〇〇원을 원고의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하고 난 후 나머지금 〇〇〇원을 아직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 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 지불각서

1. 갑 제2호증 통고서(내용증명)

1. 갑 제3호증 예금통장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 각 1통

1. 소장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O. O. 어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귀중

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 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: 민사소송 >> 소의 제기 >>이행의 소